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 ·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 이유

- 친환경적인 시설도입으로 주민신뢰도 향상 및 경제적인 폐기물 처리공정 도입으로 처리비용 절감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치
 - 구미시 금전동 24-1번지 일대 (4단지내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부지)
- 생활쓰레기 압축 · 포장 보관량 : 167톤/일 (2006년 6월말 기준)
- 압축포장 방법 : 원형포장
- 위탁시기 : 2008. 1. 1부터 환경자원화시설 완공시 까지 (약 3년)
- 위탁범위
 -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선별 · 압축기계 등 주요기자재 설치
- 처리비 지급 : 생활쓰레기 처리량(압축 · 포장)에 따라 지급

- 위탁운영비 산정
 -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구미시 생활폐기물 원형압축포장 산출용역 후 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 및 처리비 단가계약
- 수탁기관 :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업체
- 위탁업체 선정 (자격)
 - 폐기물 원형압축포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납품 실적 또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영업장 소재지 : 경상북도)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 ·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시설 운영을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시설 현황

가. 위 치

- 구미시 금전동 24-1번지 일대 (4단지내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나. 시설개요

- 부지면적 10,000평
- 압축포장기 공장 설치 : 350평
- 야적부지 조성 : 7,000평
- 침출수 저류조 : 300톤
- 생활쓰레기 압축 · 포장 보관량 : 167톤/일 (2006년 6월말 기준)

2. 압축포장 방법 : 원형포장

2006년 12월 14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관련 규모 및 형식 결정 등을 위한 자문회의결과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방식을 향후 소각 처리 시 용이성과 보관방법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원형방식으로 결정 함

3. 운영관리 조직

시설관리총괄 1인	시 설 운 영	파봉선별시설	- 운전정비 2명 - 선별 3명
		압축포장시설	- 운전정비 2명
	정비운전기사	- 투입장비 1인 - 차량적재 및 하역장비 1인 - 야적장비 1인 - 수송트럭 2인 - 야적보조원 1인(압축포장물의 안정적 야적 고려)	

※ 운영관리 인원 : 14인

(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방안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4. 위탁시기 및 범위

가. 시 기 : 2008. 1. 1부터 환경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약 3년)

나. 범 위

-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선별·압축기계 등 주요기자재 설치

5. 처리비 지급 및 산정

가. 처리비 지급 : 생활쓰레기 처리량(압축·포장)에 따라 지급

나. 위탁운영비 산정

-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구미시 생활폐기물 원형압축포장 위탁
위탁처리단가 산출용역 후 입찰을 통하여 업체선정 및 처리비
단가계약

6. 수탁기관 :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업체

7. 위탁업체 선정(자격)

가. 폐기물 원형압축포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납품 실적 또는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영업장 소재지 : 경상북도)

- 생활쓰레기의 임시적·안정적 처리 및 폐기물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 위 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위탁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참 고 자 료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

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